

#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신성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45
----------	------

제출년월일 : 2014. 10. 6.

제출자 : 신성철, 김동규, 김재국  
유화, 윤석진, 이민근  
홍순목

### 1. 제안이유

-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어 온 우리 시 응급의료서비스의 조속한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나.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3호).
- 다. 심폐소생술의 교육대상 중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중고등학생은 제외하도록 하고 교육시간 등을 구체화 함(안 제7조).
- 라.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와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제8조).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7.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현행조례(전문)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3. (생략) <u>&lt;신설&gt;</u>	제2조(정의) 1. ~ 3. (현행과 같음) 4. “심폐소생술” 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4조(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u>&lt;신설&gt;</u> ② (생략)	제4조(지원)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u>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u>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2. (생략)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 ..... 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2. (현행과 같음)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 공무원, 초중고등학생, 민방위대원, 향토 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 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한다.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홍보)</u>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제8조(홍보)</u>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호라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p> <p>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창을 수여할 수 있다.</p>
<p><u>〈신설〉</u></p> <p><u>제9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9조(비밀준수의 의무)</u>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제10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545
------------	------

제안년월일 : 2014년 10월 30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응급장비를 설치한 개설자와 관리자 모두를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으로 포함했던 것을 실제 개설자가 교육을 받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니,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교육을 받는 것으로 현실화하고,
- 홍보 외에도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을 담고 있는 조문내용에 맞게 제목을 수정함.

## **2. 주요내용**

-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와 관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제적인 관리자에 대한 교육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현실화 함(안 제7조).
- 조문의 내용 중 홍보를 비롯하여 심폐소생술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규정,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포함하고 있어 조문의 제목을 수정함(안 제8조).

##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개설자 및 관리자”를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제8조의 조문제목 “(홍보)”를 “(홍보·지원 등)”으로 한다.

#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심폐소생술” 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제5조제1호 중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 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한다.

제8조(홍보)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 공무원, 초중고등학생, 민방위대원, 향토 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p> <p>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 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한다.</p>	<p>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p> <p>②~④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조(홍보)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조(홍보·지원 등) ①~④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안산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 한다.</p> <p>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p>	